

**무배당 LIG아이라브차차운전자보험(L8.04)  
보통약관 - 자가용(1종), 영업용(2종)**

**제 1 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진단일을 말합니다)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를 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예정이율(이하 「예정이율」이라 합니다)+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후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청약의 철회)**

-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②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그 반환기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이하 「보험계약대출이율」이라 합니다)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후 청

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 ①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 및 청약서 부분을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합니다)를 이용하여 약관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5호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분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전 알릴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계약자의 답변,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 ③ 회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청약서 부분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청약서 부분을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 ①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 ②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 ⑤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

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4조(계약의 무효)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건으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제5조(계약내용의 변경)

[1]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① 보험종목
- ② 보험기간
- ③ 보험료 납입주기, 수급방법 및 납입기간
- ④ 보험가입금액
-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
- ⑥ 기타 계약의 내용

[2]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3]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4조(해약환급금)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4]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중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5]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중 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피보험자가 이 보험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하거나 파산, 이혼, 또는 이혼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경우

② 계약자가 그와 고용관계에 있는 피보험자를 해고 또는 교체한 경우

<용어풀이>  
고용관계라 함은 피고용인이 고용인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고용인은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관계를 말합니다.

#### 제6조(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1] 한번의 사고에 대하여 회사가 지급한 제17조(운전중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 및 제18조(운전중교통상해후유장해추가보험금)의 일반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률이 해당사고의 사망보험금의 80%미만인 때에는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하며, 회사가 제15조(운전중교통상해사망보험금) 및 제16조(일반상해사망추가보험금)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였거나 제17조(운전중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 제18조(운전중교통상해후유장해추가보험금)의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제19조(운전중교통상해고도후유장해연금)의 고도후유장해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2]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만기환급금 및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사망했을 경우에는 계약은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계약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8조(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중지)

[1] 회사의 보장은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 4시에 시작하며 마지막날 오후 4시에 끝납니다. 이 경우 시각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 발행지의 표준시에 따릅니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1회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 ① 제1항에서 정한 보장의 시기가 개시되지 아니한 경우
- ② 제28조(계약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 ③ 제3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 제 2 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 제9조(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기관(우체국 포함)을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② 계약자는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낼 수 있으며, 3개월 이상의 보험료를 미리 낼 때에는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계약이 보험기간중에 소멸 또는 변경되거나 보험료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 선납보험료가 있으면 선납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예정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선납보험료에 더하여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 제10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규정된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계약자가 보험료의 자동대출을 서면신청한 경우에는 제41조(보험계약대출)에 의한 보험계약대출로 보험료가 자동적으로 대출되어 계약이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대

출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까지의 이자(보험계약대출이율 이내에서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를 합산한 금액이 당해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약환급금과 계약자에게 지급할 기타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계약대출로 자동납입되는 보험료는 1년을 최고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재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 납입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약을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그 청구에 따라 처리합니다.

###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며, 회사는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고(독촉)하고 납입최고(독촉)기간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독촉)기간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보험료 수납방법이 회사의 방문수금 또는 계약자의 은행 수납방법으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 회사의 방문수금 불이행 또는 은행 납입통지서의 미교부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기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회사가 다시 수금하기로 하거나 은행 납입통지서를 다시 교부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수금 또는 재교부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기일로 합니다.

③ 제2회 이후의 보험료가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특정된 수익자 포함)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안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

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 환급금과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상계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려드립니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된 이자(보험료에 예정이율+1%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하여는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제8조(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 제28조(계약전 알릴 의무) 및 제3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 3 관 보험금등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3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 「자동차운전중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

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 「6중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중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① 피보험자의 고의
- ②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③ 계약자의 고의
- ④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⑤ 피보험자의 질병
- ⑥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 ⑦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⑧ 피보험자의 사형
- ⑨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 ⑩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⑪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 ⑫ 위 제11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 ①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 ③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①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
  - ②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③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④ 회사는 제15조(운전중교통상해사망보험금), 제16조(운전중교통상해사망추가보험금), 제17조(운전중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 제18조(운전중교통상해후유장해추가보험금), 제19조(운전중교통상해고도후유장해연금)의 경우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①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용구에 탑승(운전을 포함함)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손해
  - ②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
  - ③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용구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
  - ④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한 손해
- ⑤ 회사는 제20조(방어비용)에서 정한 방어비용은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제1항 내지 제3항 및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

- 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①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의한 음주·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
  - ②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 ③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가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중 사고를 일으킨 때
- ⑥ 제4항의 기타교통수용구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①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함),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 ②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 ③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 포함)
  - ④ 6층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기타교통수용구로 보지 아니합니다)

#### 제15조(운전중교통상해사망보험금)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운전중교통상해사망 보험가입금액을 운전중교통상해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부기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에 사망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합니다.

#### 제16조(운전중교통상해사망추가보험금)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운전중교통상해사망추가 보험가입금액을 운전중교통상해사망추가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부기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정하

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에 사망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합니다.

**제17조(운전중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

- ①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 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장해분류표의 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운전중교통상해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을 운전중교통상해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일반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분류표의 지급률이 80%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일반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장해분류표의 각호에서 정한 지급률을 운전중교통상해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운전중교통상해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애이나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해로 인정하고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 지급률로 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을 적용합니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애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애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⑤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⑥ 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⑧ 다른 사고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 ⑨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8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 ① 이 계약의 보장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 ② 위1호 이외에 이 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제18조(운전중교통상해후유장해추가보험금)**

- ①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분류표의 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운전중교통상해후유장해추가 보험가입금액을 운전중교통상해고도후유장해추가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일반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분류표의 지급률이 80%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일반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장해분류표의 각호에서 정한 지급률을 운전중교통상해후유장해추가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운전중교통상해추가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애이나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해로 인정하고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 지급률로 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을 적용합니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애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애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애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⑤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애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애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⑥ 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⑧ 다른 사고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 ⑨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8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 ① 이 계약의 보장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 ② 위1호 이외에 이 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제19조(운전중교통상해고도후유장해연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분류표의 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아래의 금액을 고도후유장해연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해 드립니다.

< 자 가 용 >

구분	지급금액	지급시기 및 지급횟수
평일운전중 교통사고	보험가입금액의 10% 해당액	매년 사고발생 해당일에 20년간 확정지급(20회)
주말운전중 교통사고	보험가입금액의 20% 해당액	매년 사고발생 해당일에 20년간 확정지급(20회)

< 영 업 용 >

구분	지급금액	지급시기 및 지급횟수
운전중 교통사고	보험가입금액의 5% 해당액	매년 사고발생 해당일에 20년간 확정지급(20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애이나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애로 인정하고 해당 장애 장애지급률의 20%를 후유장애지급률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후유장애보험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애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애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애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애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애 지급률을 결정하되 장애분류표에 장애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④ 장애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애는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⑤ 같은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애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장애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애분류표상의 두가지 이상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애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제1항의 고도후유장애연금은 수익자가 원하는 경우 이 보험의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⑧ 제1항의 주말이라 함은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 포함) 또는 근로자의 날을 말합니다.

⑨ 다른 사고로 인하여 후유장애가 2회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애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애가 이미 고도후유장애연금을 지급받은 동일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후유장애상태에 해당하는 고도후유장애연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고도후유장애연금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장애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⑩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애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9항에 규정하는 후유장애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애에 대한 고도후유장애연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애상태에 해당하는 고도후유장애연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고도후유장애연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 ① 이 계약의 보장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애로 고도후유장애연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애
- ② 위1호 이외에 이 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고도후유장애연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애 또는 고도후유장애연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애

**제20조(방어비용)**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함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 「기소」라 합니다.)된 경우에는 1사고마다 방어비용 보험가입금액을 방어비용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1조(다른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

① 피보험자가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경우 이미 존재한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으로 또는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후에 그 원인이 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이 발생한 상해나 질병의 영향으로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손해가 중하게 된 경우 회사는 그 영향이 없었던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정당한 이유없이 피보험자가 치료를 게을리하거나 또는 계약자나 수익자가 치료를 하여 주지 않음으로 인하여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손해가 중하게 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제22조(보험금의 지급한도)**

①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사고에 대한 후유장애보험금은 제17조(운전중교통상해후유장애보험금) 및 제18조(운전중교통상해후유장애추가보험금)의 고도후유장애보험금을 각각 한도로 합니다.

② 회사는 하나의 사고로 제15조(운전중교통상해사망보험금) 및 제16조(운전중교통상해사망보험금)의 사망보험금과 제17조(운전중교통상해후유장애보험금) 및 제18조(운전중교통상해후유장애보험금)의 일반후유장애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이를 각각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제17조(운전중교통상해후유장애보험금) 또는 제18조(운전중교통상해후유장애보험금)의 고도후유장애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3조(만기환급금의 지급)**

①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완납하고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는 아래의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운전중교통상해사망후유장애 보험가입금액 기준)

구분	만기환급금	
자가용	3년만기, 5년만기	10%
	10년만기, 15년만기, 20년만기	15%
영업용	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만기환급금을 지

급하여 드립니다.

**제24조(해약환급금)**

①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25조(배당금의 지급)**

회사는 이 보험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6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및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27조(보험금 청구권의 상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상실합니다.

**제 4 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 등**

**제28조(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시(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29조(계약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

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지불을 게을리 했을 때, 회사는 직업,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료를(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료를(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는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 변경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3항에 의해 보상됨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3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8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 하는 경우
- ②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29조(계약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①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 ②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

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났을 때

③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통지를 한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④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청약서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자필로 서명한 경우는 제외)

③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제1항 제1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하며,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릴 드립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해약환급금 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⑤ 제1항 제2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손해를 제29조(계약후 알릴 의무)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⑥ 손해가 제1항에 해당되는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닌 것으로 증명된 때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 제31조(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중 사기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무

러한 시기 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제 5 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 제32조(주소변경통지)

-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 제33조(보험수익자의 지정)

계약자는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23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제15조(운전중교통상해사망보험금) 및 제16조(운전중교통상해사망추가보험금)의 경우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제17조(운전중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 제18조(운전중교통상해후유장해추가보험금), 제19조(운전중교통상해고도후유장해연금), 제20조(방어비용)의 경우는 피보험자로 합니다.

### 제34조(대표자의 지정)

- ①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대표자로 지정된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 제35조(손해의 통지)

-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제36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 ① 계약자, 피보험자(또는 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서(회사양식)
  - ②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애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등)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 ④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받음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이어야 합니다.

### 제37조(보험금의 지급)

- ① 회사는 제36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3영업일, 배상책임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10영업일, 재산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20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서면통지하여 드립니다.
- ③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급적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④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제3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조사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제38조(환급금의 지급)

① 회사는 계약자 및 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리며, 환급금을 청구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은 예정이율+1%를, 그 지급일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만기환급금의 지급시기가 도래할 때에는 도래일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지급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그 사유와 지급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알린 경우의 만기환급금과 해약환급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청구일까지의 기간중 1년 이내의 기간은 예정이율의 50%,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39조(보험금을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분할지급 또는 일시지급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일시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분

할지급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정이율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40조(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계약의 체결 및 관리를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보험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 및 보험관련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 ①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②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 ③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 ④ 피보험자의 상해 및 질병에 관한 정보

### 제41조(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되어 보험금을 지급하는 날 또는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지급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과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 제 6 관 분쟁조정 등

### 제42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43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제44조(약관의 해석)

-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 제45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점포 및 대리점 포함)제작의 보험안내장(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하여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이 약관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 제46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규 및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제47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 제48조(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 무배당 LIG아이러브차차운전자보험(L8.04) 특별약관

#### 상해관련

#### 1.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자가용,영업용) 특별약관

##### 제1조(손해보상후의 계약)

- ①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회사가 제5조(후유장해보험금)의 일반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하며, 제4조(사망보험금)의 사망보험금 또는 제5조(후유장해보험금)의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2조(보상하는 손해)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제1항 및 제3항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 합니다.
- ②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 중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제2항을 적용합니다.

### 제4조(사망보험금)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의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부기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에 사망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합니다.

### 제5조(후유장해보험금)

- ①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 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일반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

- (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일반후유장해」라 함)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해로 인정하고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 지급률로 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합니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의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⑤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⑥ 같은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⑧ 다른 사고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 부위에 가중된 때에

는 최종 후유장애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애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애보험금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장애분류표의 각 신체 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㉑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애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8항에 규정하는 후유장애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애에 대한 후유장애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애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애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애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 ① 이 계약의 보장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애로 후유장애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애
- ② 위1호 이외에 이 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애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애 또는 후유장애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애

####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운전중교통상해사망보험금, 운전중교통상해사망추가보험금, 운전중교통상해후유장애보험금, 운전중교통상해후유장애추가보험금, 운전중교통상해후유장애연금, 방어비용 및 만기환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2. 일반상해50%이상후유장애연금(자가용,영업용) 특별약관

#### 제1조(손해보상후의 계약)

㉑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회사가 제2조(보상하는 손해)의 80%미만의 후유장애를 보상한 경우에는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하며, 80%이상의 후유장애를 보상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㉒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은 지급하지 아니

합니다.

㉓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2조(보상하는 손해)

㉑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애」라 합니다)되어 장애분류표(【별표 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애(이하 「일반상해50%이상고도후유장애」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아래에 정한 금액을 매 사고마다(단, 80%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합니다) 일반상해50%이상후유장애연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지급사유	지급금액	지급시기 및 지급횟수
50%이상후유장애 발생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5% 해당액	매년 사고발생 해당일에 20년간 확정지급(20회)

㉒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애에 대하여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애로 인정하고 해당 장애 지급률의 20%를 후유장애 지급률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㉓ 제1항 및 제2항의 일반상해50%이상후유장애연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애 지급률이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의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애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애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애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애 지급률을 결정

하되 장애분류표에 장애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4] 장애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애는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5] 같은 사고로 2가지 이상의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애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애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6] 제5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애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애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7] 제1항 및 제2항의 일반상해50%이상후유장애연금은 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일시지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예정이율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8] 다른 사고로 인하여 후유장애가 2회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애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애가 이미 일반상해50%이상후유장애연금을 지급받은 동일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후유장애상태에 해당하는 일반상해50%이상후유장애연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일반상해50%이상후유장애연금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장애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9]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애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8항에 규정하는 후유장애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애에 대한 일반상해50%이상후유장애연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애상태에 해당하는 일반상해50%이상후유장애연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일반상해50%이상후유장애연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① 이 계약의 보장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애로 일반상해50%이상후유장애연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애

② 위1호 이외에 이 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상해50%이상후유장애연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애 또는 일반상해50%이상후유장애연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애

###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제1항 및 제3항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 합니다.

[2]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 중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제2항을 적용합니다.

###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운전중교통상해사망보험금, 운전중교통상해사망추가보험금, 운전중교통상해후유장애보험금, 운전중교통상해후유장애추가보험금, 운전중교통상해후유장애연금, 방어비용 및 만기환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3. 운전중행선니무보험차교통상해사망후유장애(자가용) 특별약관

### 제1조(손해보상후의 계약)

[1]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회사가 제5조(후유장애보험금)의 일반후유장애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하며, 제4조(사망보험금)의 사망보험금 또는 제5조(후유장애보험금)의 고도후유장애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2]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의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합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하지 아

니하는 사유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2조(보상하는 손해)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가용자동차(이륜차는 제외함)를 운전하던 중에 뺑소니 또는 무보험차에 의한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 보조장구는 제외함)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랙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랙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 『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 ③ 제1항의 자동차를 운전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 ④ 제1항에서 뺑소니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보유불명의 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경찰관서에 뺑소니사고로 신고되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보유불명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⑤ 제1항에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대인배상 1을 제외한 자동차보험(공제 포함)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상해를 입음으로써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가해 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전부가 무보험자동차일 때에 한합니다.

###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제1항, 제3항 및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①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 또는 흥행(연습을

- 포함)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송구에 탑승(운전을 포함함)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손해
- ②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
- ③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송구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
- ④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한 손해
- ⑤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 ②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 중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제2항을 적용합니다.

### 제4조(사망보험금)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의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부기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에 사망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합니다.

### 제5조(후유장해보험금)

- ①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애분류표(【별표 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보

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일반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미만인 때에는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일반후유장해」라 함)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해로 인정하고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 지급률로 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지급일이 사고일부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의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⑤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⑥ 같은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

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⑧ 다른 사고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⑨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8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 ① 이 계약의 보장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 ② 위1호 이외에 이 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운전중교통상해사망보험금, 운전중교통상해사망추가보험금, 운전중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 운전중교통상해후유장해추가보험금, 운전중교통상해후유장해연금, 방여비용 및 만기환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4.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자기용,영업용) 특별약관

#### 제1조(손해보상후의 계약)

□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회사가 제4조(후유장해보

험금)의 일반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하며, 제3조(사망보험금)의 사망보험금 또는 제4조(후유장해보험금)의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②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의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2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아래의 교통상해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① 운행 중 대중교통수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 ②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 ③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가 승강장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② 제1항에서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아래의 교통승용구를 말합니다.

- ① 여객수송용 항공기
- ②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 기차
- ③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제외)
- ④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트카 제외)

####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제1항 및 제3항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 합니다.

②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 중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제2항을 적용합니다.

#### 제4조(사망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서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부기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에 사망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합니다.

#### 제5조(후유장해보험금)

①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애분류표(【별표 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일반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

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함)되어 장애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일반후유장해」라 함)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장애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애이나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해로 인정하고 해당 장애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 지급률로 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의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애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애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하되 장애분류표에 장애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⑤ 장애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애분류표의 각 장애분류별 최저지급률 장애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⑥ 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애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애분류표상의 두가지 이상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애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⑧ 다른 사고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

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장애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⑨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8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 ① 이 계약의 보장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 ② 위1호 이외에 이 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운전중교통상해사망보험금, 운전중교통상해사망추가보험금, 운전중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 운전중교통상해후유장해추가보험금, 운전중교통상해후유장해연금, 방이버용 및 만기환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5. 운전중교통상해의료비(자가용,영업용) 특별약관

### 제1조(보험나이의 계산)

- ①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제2조(보상하는 손해)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 「자동차운전중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1사고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사고일로부터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자동차사고, 산업재해보상사고등을 포함합니다)에는 발생한 의료비 총액의 50% 해당액을 1사고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각항에 해당하는 비용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① 한약재등의 보신용 투약비용
  - ② 병실료 차액(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이하 「상급병실」이라 함)에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내에서 예외로 합니다.
  - ③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고단위 영양제 투여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없는 검사비용
- ④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제1항에서 정한 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도 보험기간 만료전 최종 사고일로부터 계속 중인 치료기간에 대한 운전중교통상해의료비를 180일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⑤ 제1항 및 제3항의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보장액의 합계액이 제1항 또는 제3항의 비용을 초과했을 때에는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보장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의료비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⑥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 「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⑦ 제1항의 자동차를 운전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차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용어풀이>

다수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제3보험의 상해·질병·간병보험 및 손해보험의 종합·장기손해·개인연금·퇴직보험으로 합니다.

###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제1항, 제3항 및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①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용구에 탑승(운전을 포함)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손해
  - ②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
  - ③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용구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
  - ④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한 손해
- ②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 중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제2항을 적용합니다.

### 제4조(보통약관과의 관계)

①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의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

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2]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운전중교통상해사망보험금, 운전중교통상해사망추가보험금, 운전중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 운전중교통상해후유장해추가보험금, 운전중교통상해후유장해연금, 방어버용 및 만기환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6. 운전중교통상해입원일당(자가용,영업용) 특별약관

#### 제1조(보상하는 손해)

[1]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 「자동차운전중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가입금액을 최초 입원일로부터 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운전중교통상해입원일당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의 입원에 한합니다.

[2]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운전중교통상해입원일당을 계속 보상합니다.

[3]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교통상해입원일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4]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 「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5] 제1항의 자동차를 운전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차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제1항, 제3항 및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 합니다.

- ①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용구에 탑승(운전을 포함함)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손해
- ②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
- ③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용구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
- ④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한 손해
- ⑤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던중 사고를 일으킨 때

[2]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 중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제2항을 적용합니다.

#### 제3조(보통약관과의 관계)

[1]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의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2]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

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운전중교통상해사망보험금, 운전중교통상해사망추가보험금, 운전중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 운전중교통상해후유장해추가보험금, 운전중교통상해후유장해연금, 방어비용 및 만기환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7. 일반상해의료비(자가용,영업용) 특별약관

#### 제1조(보험나이의 계산)

1.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2.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제2조(보상하는 손해)

1.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1사고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사고일로부터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2.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자동차사고, 산업재해보상사고 등을 포함합니다)에는 발생한 의료비 총액의 50% 해당액을 1사고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4.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한약재등의 보신용 투약비용
2. 병실료 차액(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이하 「상급병실」이라 함)에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내에서 예외로 합니다.
3.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고단위 영양제 투여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없는 검사비용
5.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제1항에서 정한 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도 보험기간 만료전 최종 사고일로부터 계속중인 치료기간에 대한 일반상해의료비를 180일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6. 제1항 및 제3항의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보장액의 합계액이 제1항 또는 제3항의 비용을 초과했을 때에는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보장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의료비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용어풀이>  
다수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제3보험의 상해·질병·간병보험 및 손해보험의 종합·장기손해·개인연금·퇴직보험으로 합니다.

####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제1항 및 제3항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 합니다.
2.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 중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제2항을 적용합니다.

#### 제4조(보통약관과의 관계)

1.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의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운전중교통상해사망보험금, 운전중교통상해사망추가보험금, 운전중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 운전중교통상해후유장해추가보험금, 운전중교통상해후유장해연금, 방어비용 및 만기환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8. 상해입원일당(자가용,영업용) 특별약관

####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일로부터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일당액을 상해입원일당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장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의 입원에 한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상해입원일당을 계속 보상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상해입원일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④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중

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제1항, 제3항 및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에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 중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제2항을 적용합니다.

#### 제3조(보통약관과의 관계)

①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의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운전중교통상해사망보험금, 운전중교통상해사망추가보험금, 운전중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 운전중교통상해후유장해추가보험금, 운전중교통상해후유장해연금, 방어비용 및 만기환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9. 골절진단비II(자가용,영업용) 특별약관

####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별표 2】

(골절분류표 II)에서 정한 골절(치아파절 제외)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골절진단비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골절진단비는 매 사고시마다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복합골절 발생시에는 1회에 한하여 골절진단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제1항 및 제3항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 합니다.

②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 중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제2항을 적용합니다.

#### 제3조(보통약관과의 관계)

①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의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운전중교통상해사망보험금, 운전중교통상해사망추가보험금, 운전중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 운전중교통상해후유장해추가보험금, 운전중교통상해후유장해연금, 방어비용

및 만기환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10. 화상진단비(자가용,영업용) 특별약관

####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별표 3】(화상분류표)에 정한 화상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화상진단비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화상진단비는 매 사고시마다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2가지 이상의 화상 상태인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화상진단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의 화상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하여 【별표 3】(화상분류표)에 정한 화상(열상을 포함합니다)에 해당되고 심재성 2도이상의 화상을 말합니다.

####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제1항 및 제3항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 합니다.

②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 중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제2항을 적용합니다.

#### 제3조(보통약관과의 관계)

①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의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

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운전중교통상해사망보험금, 운전중교통상해사망추가보험금, 운전중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 운전중교통상해후유장해추가보험금, 운전중교통상해후유장해연금, 방어비용 및 만기환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11. 중대한화상부식진단비(자가용,영업용) 특별약관

#### 제1조(보험나이의 계산)

- ①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제2조(손해보상후의 계약)

- ① 회사가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 따라 중대한화상부식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 ②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의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3조(보상하는 손해)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중대한 화상 및 부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을 중대한화상부식진단비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제4조(중대한 화상 및 부식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계약에 있어서 「중대한 화상 및 부식」이라 함은 「9의 법칙(Rule of 9's)」 또는 「룬드와 브라우더 신체 표면적 차트(Lund & Browder chart)」에 의해 측정된 신체표면적으로 최소 20% 이상의 3도 화상 또는 부식을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9의 법칙」 또는 「룬드와 브라우더 신체 표면적 차트」 측정법처럼 표준화되고 임상학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다른 신체 표면적 차트를 이용하여 유사한 결과가 나온 것도 인정합니다.
- ② 「중대한 화상 및 부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한 의사, 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자격증을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중대한 화상 및 부식」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운전중교통상해사망보험금, 운전중교통상해사망추가보험금, 운전중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 운전중교통상해후유장해추가보험금, 운전중교통상해후유장해연금, 방어비용 및 만기환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12. 강력범죄위로금(자가용,영업용) 특별약관

###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다음 각 호에 서 정하는 강력범죄에 의하여 일상생활중에 사망하 거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 는 제외합니다)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수익자(수익자의 지급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강력범죄위로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① 형법 제 24장에서 말하는 살인의 죄
- ② 형법 제 25장에서 말하는 상해와 폭행의 죄
- ③ 형법 제 32장에서 말하는 강간과 추행의 죄 중 강간죄
- ④ 형법 제 38장에서 말하는 절도와 강도의 죄 중 강도죄
- 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하 『폭처법』이라 합니다)에 정한 폭력 등의 죄

② 제1항의 제1호의 살인, 제2호의 상해 및 폭행, 제5호의 폭력 등의 경우에는 사망하거나 4주를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은 때에 만 보상하여 드립니다.

###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① 피보험자가 범죄행위를 하던 중 또는 『폭처법』 제 4조의 범죄단체를 구성 또는 이에 가담함으로써 발생된 손해
- ② 피보험자 및 수익자의 고의 또는 피보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의한 손해
- ③ 피보험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고용주 내지 고용상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 의해 발생한 손해
- ④ 전쟁, 폭동, 소요, 노동쟁의 또는 이와 유사한 사변 중에 생긴 손해
- ⑤ 지진, 분화, 해일, 풍수해 또는 그 밖의 변재가 일어났을 때에 생긴 손해

### 제3조(보험금청구시 구비서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청구

할 때에는 보통약관 제36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의 구비서류 및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사건신고확인원(관할 경찰서장 발행)
- ② 의사진단서

### 제4조(보통약관과의 관계)

①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의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운전중교통상해사망보험금, 운전중교통상해사망추가보험금, 운전중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 운전중교통상해후유장해 추가보험금, 운전중교통상해후유장해연금, 방여비용 및 만기환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운전자비용관련

### 1. 자동차사고성형비용(자가용) 특별약관

####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 『자동차사고』라 합니다.)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위해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100만원)을 자동차사고성형비용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보상하

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① 자가용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
- ② 운행 중의 자동차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③ 운행 중의 자동차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 중의 자동차(운행 중인 자동차의 적재물을 포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자동차의 화재, 폭발 등의 자동차사고

② 피보험자가 같은 사고로 제1항에 정한 성형수술을 두 번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의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 「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서만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④ 제1항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던 중」 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차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제1항 및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 합니다.

- ①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 ②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 ③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던중 사고를 일으킨 때
- ④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중 발생한 사고

②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 중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3조(보통약관과의 관계)**

①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의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한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운전중교통상해 사망보험금, 운전중교통상해사망추가보험금, 운전중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 운전중교통상해후유장해추가보험금, 운전중교통상해후유장해연금, 방어버용 및 만기환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 주차장및아파트단지내사고위로금(자가용)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주차장 및 아파트 단지내」에서 자가용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제외합니다)로 자동차보험에서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보상을 받은 경우 아래에 정한 금액을 주차장 및 아파트 단지내 사고위로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단 아래의 제1호 및 제2호의 사고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① 피보험자의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에서 30만원이상 보상받은 경우 :1사고당 가입금액
- ② 피보험자의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에서 피해자에게 30만원이상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 1사고당 가입금액

② 제1항의 「주차장 및 아파트 단지내」라 함은 아

래의 지역을 말합니다.

- ① 아파트 단지내
- ② 지정주차장(공설, 사설을 불문함)
- ③ 기타 주택가에 주차구역선이 설정되어 있거나 사회상규(社會常規)내지 관습상 인정되는 주차구역

③ 제1항의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 「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서만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④ 제1항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던 중」 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제1항 및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 합니다.

- ①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 ②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비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 ③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던중 사고를 일으킨 때
- ④ 보유불명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자기차량손해  
위에서 「보유불명 사고」라 함은 가해차량의 보유자와 등록번호가 모두 불명이거나 가해자가 불명인 사고를 말합니다.
- ⑤ 도로주행 중(아파트 단지내 도로는 제외) 및 도로변 불법주차 중 발생한 사고
- ⑥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②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

해)의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 중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제2항을 적용합니다.

#### 제3조(보통약관과의 관계)

①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의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운전중교통상해사망보험금, 운전중교통상해사망추가보험금, 운전중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 운전중교통상해후유장해추가보험금, 운전중교통상해후유장해연금, 방어비용 및 만기환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3. 노약자피해보상위로금(자가용) 특별약관

####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어린이 또는 고령자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에 상해를 입혀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31일 이상 진료(입원 및 통원)를 받게 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노약자피해보상위로금으로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어린이라 함은 사고당시 연령이 만 16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고령자라 함은 사고당시 연령이 만 60세 이상인 자를 말합니다.

③ 제1항의 상해란 자동차보험 대인담보 1의 타인의 신체상해손해 담보에서 보상이 되었던 상해를 말함

니다.

④ 제1항의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 「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서만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⑤ 제1항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던 중」 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차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제1항 및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 합니다.

- ①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 ②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가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 ③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의한 음주,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
- ④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경우

②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 중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제2항을 적용합니다.

#### 제3조(보통약관과의 관계)

①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의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운전중교통상해사망보험금, 운전중교통상해사망추가보험금, 운전중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 운전중교통상해후유장해추가보험금, 운전중교통상해후유장해연금, 방어버용 및 만기환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4. 긴급비용(자가용) 특별약관

####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가용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피보험자의 운전 중인 자동차가 가동불능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긴급비용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 「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서만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던 중」 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차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제1항 및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

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 합니다.

- ①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 ②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 ③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 ④ 차량의 자체결함, 노후화, 정비불량에 기인하는 가동불능
- ⑤ 피보험자의 운전회피
- ⑥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②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 중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제2항을 적용합니다.

### 제3조(보통약관과의 관계)

①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의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운전중교통상해사망보험금, 운전중교통상해사망추가보험금, 운전중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 운전중교통상해후유장해추가보험금, 운전중교통상해후유장해연금, 방어비용 및 만기환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5. 형사합의사망지원금(자가용,영업용) 특별약관

###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제외합니다.)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인 경우는 제외합니다)을 사망케 하였을 경우에는 타인 각각에 대하여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형사합의사망지원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타인의 100%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의 자동차라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랙터채식 콘크리트펌프, 트랙터채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 「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서만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던 중」 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차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제1항 및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 합니다.

- ①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 ②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 ③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의한 음주,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
- ④ 자가용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②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 중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제2항을 적

용합니다.

**제3조(보통약관과의 관계)**

- ①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의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②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운전중교통상해사망보험금, 운전중교통상해사망추가보험금, 운전중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 운전중교통상해후유장해추가보험금, 운전중교통상해후유장해연금, 방어비용 및 만기환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6-1. 형사합의진단지원금(자가용)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가용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제외합니다.)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별표 4】 참조)에 해당하는 사고(단, 이 단서 중 7.8은 제외합니다. 이하 「중과실사고」라 합니다)를 일으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및 피보험자가 운전하던 자동차의 탑승자는 제외합니다)가 42일(6주), 70일(10주) 또는 140일(20주)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에 피해자 각각에 대해 아래의 금액을 형사합의지원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위 진단일의 경우 피해자 1인 기준이며, 다수 피해자의 진단일을 합하여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피해자 1인에 대하여 한 사고로 최초 진단이후에

추가 진단이 있을 경우에는 진단일을 합하여 적용합니다.

42일(6주)이상 70일(10주)미만 진단시	70일(10주)이상 140일(20주)미만 진단시	140일(20주)이상 진단시
보험가입금액의 30%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의 100%

- ② 피보험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의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 「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서만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 ④ 제1항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제1항 및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 합니다.
  - ①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 ②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가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 ③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의한 음주,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
  - ④ 자가용의 경우 자동차를 영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 ②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 중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제2항을 적

용합니다.

**제3조(보통약관과의 관계)**

- ①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의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②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운전중교통상해사망보험금, 운전중교통상해사망추가보험금, 운전중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 운전중교통상해후유장해추가보험금, 운전중교통상해후유장해연금, 방어비용 및 만기환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6-2. 형사합의진단지원금(영업용)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영업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자동차 중 이륜자동차를 제외)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별표 4】 참조)에 해당하는 사고(단, 이 단서 중 7.8은 제외합니다. 이하 「중과실사고」라 합니다)를 일으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합니다)가 42일(6주), 70일(10주) 또는 140일(20주)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에 피해자 각각에 대해 아래에 정한 금액을 형사합의진단지원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위 진단일의 경우 피해자 1인 기준이며, 다수 피해자의 진단일을 합하여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피해자 1인에 대하여 한 사고로 최초 진단이후에 추가 진단이 있을 경우에는

진단일을 합하여 적용합니다.

42일(6주)이상 70일(10주)미만 진단시	70일(10주)이상 140일(20주)미만 진단시	140일(20주)이상 진단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의 30%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의 50%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의 100%

- ② 피보험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의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 「6중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중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서만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 ④ 제1항의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제1항 및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①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 ②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비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범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 ③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의한 음주,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
  - ④ 피보험자가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 ②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 중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3조(보통약관과의 관계)**

- ①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의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②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운전중교통상해사망보험금, 운전중교통상해사망추가보험금, 운전중교통상해유유장해보험금, 운전중교통상해유유장해추가보험금, 운전중교통상해유유장해연금, 방어비용 및 만기환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6-3. 형사합의진단지원금추가-자가용확장(영업용)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가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자동차 중 이륜자동차를 제외)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별표 4】 참조)에 해당하는 사고(단, 이 단서 중 7,8은 제외합니다. 이하 「중과실사고」라 합니다)를 일으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및 피보험자가 운전하던 자동차의 탑승자는 제외합니다)가 42일(6주), 70일(10주) 또는 140일(20주)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에 피해자 각각에 대해 아래에 정한 금액을 형사합의진단지원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위 진단일의 경우 피해자 1인 기준이며, 다수 피해자의 진단일을 합하여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피해자 1인에 대하여 한 사고로 최초 진단이후에 추가 진단이 있을 경우에는 진단일

을 합하여 적용합니다.

42일(6주)이상 70일(10주)미만 진단시	70일(10주)이상 140일(20주)미만 진단시	140일(20주)이상 진단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의 30%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의 50%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의 100%

- ② 피보험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의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 「6중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중 건설기계가 작업 기계로서만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 ④ 제1항의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제1항 및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①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 ②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비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범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 ③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의한 음주,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
  - ④ 피보험자가 자가용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 ②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 중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제2항을 적용합니다.

### 제3조(보통약관과의 관계)

①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의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운전중교통상해사망보험금, 운전중교통상해사망추가보험금, 운전중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 운전중교통상해후유장해추가보험금, 운전중교통상해후유장해연금, 방어비용 및 만기환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7. 생활안전지원금(자가용, 영업용) 특별약관

###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었을 경우 1사고마다 구속기간 동안 최고 180일을 한도로 구속 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생활안전지원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 「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서만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던 중」 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차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제1항 및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②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가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③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의한 음주,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

②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 중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제2항을 적용합니다.

### 제3조(보통약관과의 관계)

①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의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운전중교통상해사망보험금, 운전중교통상해사망추가보험금, 운전중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 운전중교통상해후유장해추가보험금, 운전중교통상해후유장해연금, 방어비용 및 만기환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8. 벌금(자가용,영업용) 특별약관

###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받은 벌금액(확정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벌금액을 말하며,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사고의 벌금 확정판결이 보험기간 종료후에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합니다)을 1사고당 2,000만원을 한도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벌금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공제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 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의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 「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서만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④ 제1항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제1항 및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②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③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의한 음주,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

②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 중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 제3조(보통약관과의 관계)

①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의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운전중교통상해사망보험금, 운전중교통상해사망추가보험금, 운전중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 운전중교통상해후유장해추가보험금, 운전중교통상해후유장해연금, 방어비용 및 만기환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9. 자동차보험료할증지원금(자가용) 특별약관

###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가용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이나 자기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야기하였거나 타인의 재물에 손상을 입히는 사고를 야기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1사고

마다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자동차보험료할증지원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서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상태란 의사에 의한 치료, 처치를 말하며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책임보험)의 타인의 신체상해손해 또는 종합보험의 자기신체상해손해의 보상이 되었던 상해를 말합니다. 그리고 타인의 재물에 손상을 입히는 사고란 종합보험의 대물배상의 보상이 되었던 손해를 말합니다.

③ 제1항의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 「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서만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④ 제1항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차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제1항 및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①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 ②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비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범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 ③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의한 음주,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
- ④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경우

②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 중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제2항을 적용합니다.

### 제3조(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계약자, 피보험자(또는 수익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보통약관의 제32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 ② 자동차보험의 보험금 지급 관련 서류
- ③ 기타 관련 증명서류

### 제4조(보통약관과의 관계)

①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의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운전중교통상해사망보험금, 운전중교통상해사망추가보험금, 운전중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 운전중교통상해후유장해추가보험금, 운전중교통상해후유장해연금, 방어비용 및 만기환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10. 면허정지위로금(자가용,영업용) 특별약관

###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자동차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일시 정지되었을 경우에는 면허정지기간 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면허정지위로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유가 교통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면허정지위로금을 지

급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의 면허정지기간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교정교육을 이수하여 면허정지기간을 감경받았거나 감경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전체 면허정지기간에서 감경받았거나 감경받을 수 있는 기간을 차감한 기간을 말합니다. 단, 행정기관의 교정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면허정지기간을 감경받지 못하여 면허정지 처분기간 이후에 경찰서의 행정처분조치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의 면허정지위로금은 면허정지기간동안 최고 60일을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제1항의 자동차라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 「6중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중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서만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⑤ 제1항의 자동차를 운전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제1항 및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①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 ②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범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 ③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의한 음주,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

②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 중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제2항을 적용합니다.

### 제3조(보통약관과의 관계)

①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의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운전중교통상해사망보험금, 운전중교통상해사망추가보험금, 운전중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 운전중교통상해후유장해추가보험금, 운전중교통상해후유장해연금, 방어비용 및 만기환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11. 면허취소위로금(자가용,영업용) 특별약관

### 제1조(손해보상후의 계약)

① 회사가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 따라 면허취소위로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②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의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④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2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 「자동차

차 운전중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자동차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면허취소위로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 「6중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중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서만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의 자동차를 운전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제1항 및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①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 ②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 ③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의한 음주,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

②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 중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제2항을 적용합니다.

###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운전중교통상해사망보험금, 운전중교통상해사망추가보험금, 운전중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 운전중교통상해후유장해추가보험금, 운전중교통상해후유장해연금, 방어비용

및 만기환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12. 자기차량전부손해위로금(자가용) 특별약관

###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한 자가용자동차(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에 한합니다)가 전부손해(사고발생시 차량가액 기준)가 발생한 경우 또는 자가용자동차를 도난당하여 도난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난 때에도 이를 찾지 못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자기차량전부손해위로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전부손해라 함은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없어짐 또는 망가져서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수리할 경우의 수리비용이 차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③ 제2항의 차량가액이라 함은 매년 자동차보험 가입시점에 또는 사고발생 당시 적용되는 보험개발원이 발행하는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상의 차량기준가액을 말합니다.

④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굴삭기(이하 「6중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중 건설기계는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⑤ 제1항에서 「자동차를 운전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제1항 및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 합니다.

- ①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 ②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 ③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
- ④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②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 중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제2항을 적용합니다.

### 제3조(보통약관과의 관계)

①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의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운전중교통상해사망보험금, 운전중교통상해사망추가보험금, 운전중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 운전중교통상해후유장해추가보험금, 운전중교통상해후유장해연금, 방어비용 및 만기환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13. 자기차량부분손해(100만원이상)위로금(자가용) 특별약관

###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피

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한 자가용자동차(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에 한합니다)가 부분손해(사고발생시 차량가액 기준)를 당하여 개인용자동차보험에서 자기차량사고로 100만원 이상의 손해(자기차량사고보상금액과 자기부담금을 합한 금액)를 보상받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자기차량부분손해(100만원이상)위로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서 부분손해라 함은 피보험자동차에 전부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자동차를 도난당하여 도난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난 때에 도이를 찾지 못한 경우를 제외한 손해를 말합니다.

③ 제2항에서 전부손해라 함은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없어짐 또는 망가져서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수리할 경우의 수리비용이 차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④ 제3항의 차량가액이라 함은 매년 자동차보험 가입시점에 또는 사고발생 당시 적용되는 보험개발원이 발행하는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상의 차량기준가액을 말합니다. 단, 차량기준가액이 없거나 이와 다른 가액으로 보험계약을 맺었을 경우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액이 손해가 발생한 장소와 시간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그 손해가 발생한 장소와 시간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합니다.

⑤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덩크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굴삭기(이하 「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⑥ 제1항에서 「자동차를 운전중」이라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제1항 및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①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 ②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 ③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
- ④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②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 중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제2항을 적용합니다.

### 제3조(보통약관과의 관계)

①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의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운전중교통상해사망보험금, 운전중교통상해사망추가보험금, 운전중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 운전중교통상해후유장해추가보험금, 운전중교통상해후유장해연금, 방어비용 및 만기환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14. 대형교통사고위로금(영업용 승합자동차) 특별약관

###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영업용 승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 우연하게도 3명 이

상 사망하거나 20명 이상 사상하는 자동차 사고를 야기하였을 경우 1사고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대형사고위로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사고를 야기하였을 경우란 피보험자가 발생사고의 제1당사자로서 주된 책임을 지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③ 제1항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던 중」 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행동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제1항 및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①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 ②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 ③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의한 음주,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
- ④ 피보험자의 중앙선침범으로 인한 사고

②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 중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제2항을 적용합니다.

### 제3조(보통약관과의 관계)

①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의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운전중교통상해사망보험금, 운전중교통상해사망추가보험금, 운전중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 운전중교통상해후유장해추가보험금, 운전중교통상해후유장해연금, 방어비용 및 만기환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15. 대형교통사고위로금(영업용 화물자동차) 특별약관

#### 제1조(보상하는 손해)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 우연하게도 3명 이상 사망하거나 20명 이상 사상하는 자동차 사고를 야기하였을 경우 1사고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대형사고위로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자동차사고를 야기하였을 경우란 피보험자가 발생사고의 제1당사자로서 주된 책임을 지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 ③ 제1항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던 중』 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차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제1항 및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①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 ②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범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 ③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의한 음주,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
  - ④ 피보험자의 중앙선침범으로 인한 사고
- ②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 중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에는 보통

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제2항을 적용합니다.

#### 제3조(보통약관과의 관계)

- ①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의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②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운전중교통상해사망보험금, 운전중교통상해사망추가보험금, 운전중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 운전중교통상해후유장해추가보험금, 운전중교통상해후유장해연금, 방어비용 및 만기환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배상책임관련

### 1.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장 II (자가용, 영업용) 특별약관

#### 제1조(보상하는 손해)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다음에 열거하는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이하 『대인사고』라 합니다.) 또는 재물의 손해(이하 『대물사고』라 합니다.)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①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합니다. 이하 『주택』이라 합니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
  - ②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를 제외합니다)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

② 제1항의 피보험자라 함은 아래에 정한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및 그 가족을 말합니다.

- ①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 본인」이라 합니다)
- ② 피보험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이하 「배우자」라 합니다)
- ③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동거친족(민법 제 777조)
- ④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 중인 미혼자녀

③ 위 제2항에서 피보험자 본인과 본인 이외의 피보험자와의 관계는 사고발생 당시의 관계를 말합니다.

### 제2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① 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대위 취득할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뺍니다)
- ② 피보험자가 손해방지의 방법을 조사하여 구하기 위하여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그러나 피보험자가 손해방지의 방법을 조사하여 구한 후에 배상책임이 없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 방법을 조사하여 구함에 따른 비용 중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과 지급에 관하여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은 비용만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③ 피보험자가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의 절차를 밟는데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④ 피보험자가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보수,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⑤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가 손해배상처리를 할 경우 피보험자가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

② 제1항의 손해에 대한 회사의 보상한도는 매 회의 사고마다 자기부담금(「대인배상책임」은 없음, 「대물배상책임」은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하는 「대인배상책임」 및 「대물배상책임」 손해를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아래와 같습니다.

- ① 제1항 제1호의 손해배상금 :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1억원한도)
- ②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비용 : 피보험자가 지급한 비용의 전액. 그러나, 제1항 제1호의 손해배상금이 보상한도액을 넘는 경우에는 제1항 제4호의 비용은 보상한도액의 제1항 제1호의 손해배상금에 대한 비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

###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의 고의
- ② 계약자의 고의
- ③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④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 ⑤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 ⑥ 제5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②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배상책임
- ②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 ③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 신체의 장애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 ④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가중된 배상책임
- ⑤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 ⑥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의 손해에 대하여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⑦ 피보험자의 심신상실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 ⑧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 ⑨ 항공기, 선박,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은 제외합니다), 총기(공기총은 제외합니다)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 ⑩ 주택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③ 회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 ①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지 않습니다.

**제4조(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5조(계약의 무효)**

- 계약을 맺을 때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으면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 ① 계약에 관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었을 경우
  - ② 계약을 맺을 때 보험목적에 이미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그 원인이 생긴 것을 알면서도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제6조(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를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7조(손해방지의무)**

-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①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일체의 방법을 강구하는 일
  - ②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한 필요한 절차를 취할 일
  - ③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을 일.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④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을 일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액을 아래에 따라 결정합니다.
- ①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뺀다.
  - ②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뺀다.
  - ③ 제1항 제4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과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8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피보험자 및 계약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 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제9조(보험금의 부담)

① 회사는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에는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넘을 때에는,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 제10조(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의 행사 및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회사가 드립니다.

③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 제11조(보험금 청구권의 상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손해에 대한 청구권을 잃게 됩니다.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상당한 이유없이 손해의 조사를 방해 또는 회피할 때에는 그 해당 손해

#### 제12조(계약후 알릴 의무)

① 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①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②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맺으려고 하든지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③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때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제13조(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통약관 제28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②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12조(계약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③ 상당한 이유없이 손해조사를 거부 또는 회피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①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 ②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을 때
- ③ 보증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청약서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자필로 서명한 경우는 제외)

③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④ 제1항 제1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하며,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 사실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해약환급금 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⑤ 손해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닌 것으로 증명된 때에는 제4항에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 제14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①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발생의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 ② 제 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 ③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 받았을 경우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하며, 제1항 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제15조(특별약관의 소멸)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더라도 이 특별약관은 소멸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때까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1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운전중교통상해사망보험금, 운전중교통상해사망추가보험금, 운전중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 운전중교통상해후유장해추가보험금, 운전중교통상해후유장해연금, 방어비용 및 만기환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제도성 특별약관

### 1.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

#### 제1조(계약의 체결 및 효력)

- ①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보통약관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 ② 이 특별약관의 효력발생일은 보통약관 제8조(회사의 보장의 개시 및 종기)에서 정한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 ③ 보통약관이 해지, 기타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④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으로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경우에 한하며 일회적인 사용은 제외), 관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① 회사는 보통약관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중에 이륜자동차를 운전(탑승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제1항의 이륜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이륜자동차【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2륜의 자동차(2륜인 자동차에 1륜의 축차를 붙인것과 배기량 125cc이하로서 3륜이상인 자동차를 포함합니다)】와 배기량이 50cc미만(전기로 동력을 발생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정격 출력이 0.59kW미만)인 이륜자동차를 말합니다.
- ③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사고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인가 아닌가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관할 경찰서에서 발행한 사고처리 확인원등으로 결정합니다.

#### 제3조(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보통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보통약관 제12조(보험료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보통약관과 동시에 이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2. 전자거래 특별약관

#### 제1조(적용범위)

회사는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따라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이하 「사이버몰」이라 합니다)을 이용하여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 제2조(청약서 부분 및 보험약관의 교부)

-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3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이버몰에 게시된 청약서, 보험약관전부 및 보험약관의 중요내용에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청약서 및 보험약관 교부와 보험약관 중요내용을 알려드린 것으로 간주합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을 위반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일 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이 보험의 보험계약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

회사는 보통약관 제3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이버몰에서 계약의 청약과 관련하여 계약자 등이 청약서에 전자거래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을 한 경우 그 전자서명을 계약자 등이 직접 서명날인한 것으로 봅니다.

#### 제4조(보험료의 납입)

① 이 특약에 의한 보험료의 납입은 은행(우체국을 포함합니다)을 이용한 자동납입이나 신용카드(이하

- 『신용카드』라 합니다.)를 이용한 납입에 한합니다.
- ② 자동납입의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을 받은 날을, 신용카드를 이용한 납입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보험료의 영수시점으로 봅니다. 다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보험료 납입 및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제 보험료가 이체된 날과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은 날을 보험료의 영수시점으로 봅니다.
  - ③ 계약자는 지정계좌의 번호가 변경되거나 폐쇄 또는 거래정지된 경우에는 이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④ 계약자가 사고카드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보험자의 보장개시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 ⑤ 제4항에서 사고카드라 함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 위조, 변조된 카드, 무효 또는 거래정지 통보를 받은 카드, 카드상에 기재되어 있는 회원과 이용자가 서로 다른 카드를 말합니다.

####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3. 단체취급 특별약관

#### 제1조(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단체취급계약』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다음 중 한가지의 단체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 ① 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조합 등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 다만, 사업장, 직제, 직종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의 단체소속 여부는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②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변호사회, 의사회 등 동업자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 ③ 그 밖에 단체의 구성원이 명확하고 위험의 동질성이 확보되어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 ② 보험계약자는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 내지 단

체의 소속원으로 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아닌 단체의 소속원이 보험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원이 보험계약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③ 이 특별약관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단체에 소속된 피보험자수가 최초 계약시 5인 이상(이하 『피보험자단체』라 합니다)이거나 단체에 소속된 계약자수가 최초 계약시 5인 이상(이하 『계약자단체』라 합니다)이어야 합니다. 또한, 단체 소속원의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를 피보험자로 할 수 있습니다.

#### 제2조(대표자의 선정)

단체의 대표자 또는 직책상 대표자를 대리할 수 있는 자 또는 제1조(적용범위)의 제2항에서 정한 보험계약자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합니다.

#### 제3조(피보험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① 단체취급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를 증가, 감소 또는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또는 제2조(대표자의 선정)에서 정한 대표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회사의 보장은 회사가 승인한 이후부터 시작되며 회사가 승인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서면이 회사에 접수된 때를 승인한 때로 봅니다.

- ① 피보험자단체에 대한 단체취급계약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 감소시에 당해 피보험자의 계약을 해지된 것으로 하며,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보험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변경된 보험료를 받고, 추가 또는 환급되는 책임준비금은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 증가나 교체시에 회사가 받아야 할 책임준비금차액이 발생한 경우 회사의 보장은 책임준비금을 정산한 후 변경된 보험료를 납입하는 날부터 시작합니다.
- ② 피보험자단체에 대한 단체취급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증가 또는 교체될 경우에 양과 같이 면책기간이 있는 보장에 있어서는, 피보험자 증가시에는 책임준비금을 정산한 후 변경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면책기간이 적용되

며, 피보험자 교체시에는 회사의 승인일부터  
면책기간이 적용됩니다.

③ 계약자단체에 대한 단체취급계약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수의 감소시에 당해 피보험자의  
계약을 개별계약으로 전환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회사는 새로이 증  
가 또는 교체되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하여는 보상하  
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제4조(적용보험료)

① 계약자수 또는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는 단체취급보험료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②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수가 감소하여 5인 미만이  
된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후 피보험  
자수가 증가하여 5인 이상이 된 때에는 다시 제1항  
을 적용합니다.

#### 제5조(보험료납입)

① 보험료는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와 회사가 정  
한 날에 대표자가 보험계약자를 대리하여 보험료를  
일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급여이체 및 자동이  
체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에는 일괄납입으로 보  
입니다.

② 회사는 납입보험료에 대한 영수증을 대표자에게  
교부합니다. 다만,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의 요구  
가 있을 경우이거나 계약자단체인 경우에는 피보험  
자별로 납입증명서를 발행하여 드립니다.

####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  
특별약관은 당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하  
여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속단체를 이탈  
하였을 때

② 보험료를 일괄하여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특별약관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는 단체취급보험료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제7조(적용특칙)

이 특별약관에서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는 보통약관 제4조(계약의 무효)를 적용하지 아니  
하며, 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만 보험가입증서(보험  
증권)를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별로 보  
험가입증서(보험증권)를 발행하여 드립니다.

####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 4.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 제1조(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부터 이 특별약관에  
따라 계약자의 거래은행 지정계좌를 이용하여 보험  
료를 자동 납입합니다.

#### 제2조(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  
료 납입해당일에도 불구하고 매월 회사가 정하는 날  
중 보험계약자가 희망하는 일자로 합니다.

#### 제3조(계약후 알릴 의무)

계약자는 지정계좌의 번호가 변경 또는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이 사실을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  
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 가. 초회보험료자동납입 추가특별약관

#### 제1조(보험료의 납입)

① 보험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의 납입방법을 보험계  
약자의 거래은행 지정 계좌를 통한 자동납입으로 가  
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회사는 청약서를 접수하고 자  
동이체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다만, 보험계  
약자의 귀책사유로 보험료의 납입이 불가능한 경우에  
는 거래은행의 지정계좌로부터 제1회 보험료가 이체  
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를 청약일 및 제1회 보험료

납입일로 하여 무배당 보통약관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회사는 청약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금융기관의 해당계좌에서 제1회 보험료를 받고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를 교부합니다.

#### 제2조(계약후의 알릴의무)

계약자는 지정계좌의 번호가 변경 또는 거래정지된 경우에는 이 사실을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제3조(준용규정)

이 초회보험료자동납입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보험료자동납입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 5. 신용카드 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 제1조(적용범위)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신용카드회사(이하 「카드회사」라 합니다)의 카드회원을 계약자로 하여 초회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나 카드회사의 카드회원인 계약자가 회사와 보험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신용카드 법인대리점을 통하여 보험료를 자동납입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 제2조(보험료의 영수)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정해진 신용카드로써 보험료를 결제하기 위하여 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보험료의 영수시점으로 봅니다.(다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카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제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은 날을 보험료의 영수시점으로 봅니다)

#### 제3조(사고카드계약)

① 계약자가 사고카드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보험자의 보장개시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② 제1항의 사고카드라 함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 위조·변조된 카드, 무효 또는 거래정지된 카드, 카드상에 기재되어 있는 회원과 이용자가 서로 다른

카드를 말합니다.

####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별표 1】 장애분류표**

□ 총 칙

1. 장애의 정의

- 1) 「장애」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애에 포함되지 않는다.
- 2)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시 장애 회복의 가망이 없는 상태로써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 3) 「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 4)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후 한 시적으로 나타나는 장애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장애 지급률의 20%를 한시장애 지급률로 정합니다.

2. 신체부위

「신체부위」라 함은 ① 눈 ② 귀 ③ 코 ④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⑤ 외모 ⑥ 척추(동뼈) ⑦ 체간골 ⑧ 팔 ⑨ 다리 ⑩ 손가락 ⑪ 발가락 ⑫ 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⑬ 신경계·정신행동의 13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우의 눈, 귀, 팔, 다리는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

3. 기타

- 1) 하나의 장애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애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애에 다른 장애가 동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한다.
- 2)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 3)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여 인공심박동기 등 장치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애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4) 장애진단서에는 ① 장애진단명 및 발생시기 ② 장애의 내용과 그 정도③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④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다만, 신경계·정신행동 장애의 경우 ① 개호여부 ② 객관적 이유 및 개호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장애분류별 판정기준

1. 눈의 장애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
1) 두 눈이 멀었을 때	100
2) 한 눈이 멀었을 때	50
3)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35
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25
5) 한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로 된 때	15
6) 한 눈의 교정시력이 0.2 이하로 된 때	5
7) 한 눈의 안구에 뚜렷한 운동장애나 뚜렷한 조절기능장애를 남긴 때	10
8) 한 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 반맹증, 시야협착, 암점을 남긴 때	5
9)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10
10)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를 남긴 때	5

나. 장애판정기준

- 1) 시력장애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측정한다.
- 2)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시력을 말한다.
- 3) 「한 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눈동자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광각무」) 거꾸 가릴 수 있는 경우(「광각」)를 말한다.
- 4) 안구운동장애의 판정은 외상 후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그 장애정도를 평가한다.
- 5) 「안구의 뚜렷한 운동장애」라 함은 안구의 주시야의 운동범위가 정상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나 정면 양안시에서 복시(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임)를 남긴 때를 말한다.
- 6) 「안구의 뚜렷한 조절기능장애」라 함은 조절력이 정상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조절력의 감소를 무시할 수 있는 45세 이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7) 「시야가 좁아진 때」라 함은 시야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야의 60%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 8)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라 함은 눈꺼풀의 결손으로 인해 눈을 감았을 때 각막(검은 자위)이 완전히 덮여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9)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눈을 떴을 때 동공을 1/2 이상 덮거나 또는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10) 외상이나 화상 등에 의하여 눈동자의 직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이 가산된다. 이 경우 눈동자가 적출되어 눈자위의 조직요물(凹沒) 등에 의해 의안까지 삽입할 수 없는 상태이면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으로, 의안을 삽입할 수 있는 상태이면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으로 지급률을 가산한다.
- 11)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포함하여 장해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안면부의 추상(추한 모습)은 두 가지 장해평가 방법 중 피보험자에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 2. 귀의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80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45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5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15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10

### 나. 장해판정기준

-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4)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50cm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ABR), 자기청력계기검사, 어음항방사검사」 등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 다. 귓바퀴의 결손

- 1)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가 1/2이상 결손된 경우를 말하며, 귓바퀴의 결손이 1/2미만이고 기능에 문제가 없으면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로 평가한다.

## 3. 코의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15

### 나. 장해판정기준

-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양쪽 코의 호골관 내지는 양쪽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를 말하며, 후각강되는 장해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 2) 코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수반한 때에는 기능장해와 각각 합산하여 지급한다.

## 4.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
1)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100
2)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80
3)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40
4)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5)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6)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7)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20
8)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10
9)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5

나. 장애의 평가기준

- 1) 씹어먹는 기능의 장애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응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어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 ① 구순음(ㅁ, ㅂ, ㅍ)
  - ② 치설음(ㄴ, ㄷ, ㄹ)
  - ③ 구개음(ㄱ, ㅋ, ㆁ)
  - ④ 후두음(ㅇ, ㅎ)
- 6)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기능에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위 5)의 4종의 어음 중 2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7)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위 5)의 4종의 어음 중 1종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8) 뇌의 언어중추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의 경우에도 말하는 기능의 장애로 평가한다.
- 9) 「치아의 결손」이란 치아의 상실 또는 치아의 신경이 죽었거나 1/3 이상이 파절된 경우를 말한다.
- 10) 유상의치 또는 가교의치 등을 보철한 경우의 지대관 또는 구의 장착치와 포스트, 인레인만을 한 치아는 결손된 치아로 인정하지 않는다.
- 11) 상실된 치아의 크기가 크든지 또는 치간의 간격이나 치아 배열구조 등의 문제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운 치아가 결손된 경우에는 사고로 결손된 치아 수에 따라 지급률을 결정한다.
- 12) 어린이의 유치와 같이 새로 자라서 갈 수 있는 치아는 장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13) 신체의 일부에 탈착분리 가능한 의치의 결손은 장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5.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애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15
2)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5

나. 장애판정기준

- 1) 「외모」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 2) 「추상(추한 모습)장애」라 함은 성형수술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추한 모습)을 말하며, 재건수술로 흉터를 줄일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3)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추한 모습)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다.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 1) 얼굴
  - ①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②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 ③ 직경 5cm 이상의 조직함몰
  - ④ 코의 1/2이상 결손
- 2) 머리
  - ①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 ②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 3) 목
  - ①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라.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

- 1) 얼굴
  - ①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② 길이 5cm 이상의 추상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 ③ 직경 2cm 이상의 조직함몰
  - ④ 코의 1/4이상 결손
- 2) 머리
  - ①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모발결손
  - ② 머리뼈의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 3) 목
  - ①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마. 손바닥 크기

「손바닥 크기」라 함은 해당 환자의 수지를 제외한

수장부의 크기를 말하며, 통산 12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8×10cm(1/2 크기는 40cm<sup>2</sup>, 1/4 크기는 20cm<sup>2</sup>), 6~11세의 경우는 6×8cm(1/2 크기는 24cm<sup>2</sup>, 1/4 크기는 12cm<sup>2</sup>), 6세 미만의 경우는 4×6cm(1/2 크기는 12cm<sup>2</sup>, 1/4 크기는 6cm<sup>2</sup>)로 간주한다.

## 6. 척추(등뼈)의 장애

###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
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애를 남긴 때	40
2)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애를 남긴 때	30
3)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애를 남긴 때	10
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50
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30
6)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15
7)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20
8)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15
9)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10

### 나. 장애판정기준

- 1) 척추(등뼈)는 경추(목뼈) 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로 한다.
- 2) 척추(등뼈)의 장애는 퇴행성 기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본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 3) 심한 운동장애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4개 이상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정된 상태
- 4) 뚜렷한 운동장애
  - ①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3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정된 상태
  - ② 머리뼈와 상위경추(상위목뼈: 제1,2목뼈)간의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을 때
- 5) 약간의 운동장애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2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정된 상태
- 6) 심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35° 이상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2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 7) 뚜렷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15° 이상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1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 8) 약간의 기형  
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경도(가벼운 정도)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 9)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인하여 추간판을 2마디 이상 수술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2회 이상 수술하고 마미신경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애가 있는 경우
- 10)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 1마디를 수술하여 신경증상이 뚜렷하고 특수 보조검사서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 11)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특수검사(뇌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에서 추간판 병변이 확인되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만한 하지방사통(주변부위로 뻗치는 증상) 또는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
- 12)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애 및 기형장애로 평가하지 아니한다.

## 7. 체간골의 장애

###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
1)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5
2)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0

### 나. 장애판정기준

- 1) 「체간골」이라 함은 어깨뼈, 골반뼈,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를 말하며, 이를 모두 동일부위로 한다.
- 2)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 「이라 함은 아래와 같다.
  - ① 천장관절 또는 치골관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골이 2.5cm 이상 분리된 부정유합 상태 또는 여자에 있어서 정상분만에

- 지장을 줄 정도의 굴반의 변형이 남은 상태
- ② 나체가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를 통하여 측정된 각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
- 3) 「빛장뼈, 가슴뼈, 갈비뼈 또는 어깨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때」라 함은 나체가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를 통하여 측정된 각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4) 갈비뼈의 기형은 그 개수와 정도, 부위 등에 관계없이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애로 취급한다.

8. 팔의 장애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
1) 두 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100
2)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60
3) 한 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4) 한 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20
5) 한 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10
6) 한 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5
7)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20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10
9) 한 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5

나. 장애판정기준

-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애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애를 판정한다.
-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애(예컨대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장애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애에 대하여는 장애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肩關節)부터 손목관절까지를 말한다.
- 4) 「팔의 3대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및 손목관절을 말한다.
- 5)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

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 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 6) 팔의 관절기능 장애 평가는 팔의 3대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적 신체장애 평가지침」의 정상각도와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애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애부위의 장애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애상태를 명확히 한다.
-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 ① 완전 강직(관절근육)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 ②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 나) 「심한 장애」라 함은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된 경우
  - ②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 다) 「뚜렷한 장애」라 함은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 라) 「약간의 장애」라 함은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 7)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요골과 척골의 2개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요골과 척골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9)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 또는 요골과 척골에 변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장애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 2)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관절에 기능장애가 생기고 다른 1관절에 기능장애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9. 다리의 장애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
1) 두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100
2)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60
3)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4)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20
5)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10
6)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5
7)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20
8)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10
9) 한 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5
10) 한 다리가 5cm 이상 짧아진 때	30
11) 한 다리가 3cm 이상 짧아진 때	15
12) 한 다리가 1cm 이상 짧아진 때	5

나. 장애판정기준

-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애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애를 판정한다.
-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애(예컨대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장애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애에 대하여는 장애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 3)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로부터 발목관절까지를 말한다.
-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목관절을 말한다.
- 5)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로부터 상장애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릎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 6) 다리의 관절기능 장애 평가는 하지의 3대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적 신체장애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애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애부위의 장애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애상태를 명확히 한다.
  -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 ① 완전 강직(관절운동)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 ②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 나) 「심한 장애」라 함은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된 경우
    -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 ③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서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 다) 「뚜렷한 장애」라 함은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0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 라) 「약간의 장애」라 함은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 7)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경골과 종아리뼈의 2개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경골과 종아리뼈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9)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 또는 경골에 기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10) 다리의 단축은 상전장골극에서부터 경골내측과 하단까지의 길이를 측정하여 정상측 다리의 길이와 비교하여 단축된 길이를 산출한다. 다리 길이의 측정에 이용하는 골표적(bony landmark)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나 다리의 단축장애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scanogram을 통하여 다리의 단축정도를 측정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 1) 1하지(다리와 발가락)의 장애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 2)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에 기능장애가 생기고 다른 1관절에 기능장애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 10. 손가락의 장애

###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
1) 한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55
2) 한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15
3) 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1손가락 마다)	10
4) 한손의 5개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30
5) 한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10
6) 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1손가락 마다)	5

### 나. 장애판정기준

- 1)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 2)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 3)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으로 손가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 4)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먼쪽으로 손가락뼈를 잃었거나 뼈조각이 떨어져 있는 것이 엑스선 사진으로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 5) 「손가락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손가락의 생리적 운동영역이 정상 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이며 이 경우 손가락관절의 굴신 운동 가능영역에 의해 측정한다. 첫째 손가락 이외의 다른 네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 6) 한 손가락에 장애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 11. 발가락의 장애

###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
1) 한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40
2) 한발의 5개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0
3)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잃었을 때	10
4)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1발가락마다)	5
5) 한발의 5개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20
6) 한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8
7)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1발가락마다)	3

### 나. 장애판정기준

- 1) 「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 지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잃었을 때를 말한다.
- 2) 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측근-중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한다.
- 3)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다른 네 발가락에 있어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먼쪽으로 발가락뼈를 잃었을 때를 말하고 단순히 살점이 떨어진 것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 4) 「발가락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발가락의 생리적 운동 영역이 정상 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를 말하며, 이 경우 발가락의 주된 기능인 발가락 관절의 굴신기능을 측정하여 결정한다.
- 5) 한 발가락에 장애가 생기고 다른 발가락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 12. 흉복부장기 및 비호생식기의 장애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75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50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20

나. 장애의 판정기준

-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 ① 심장,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 ②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 ③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때
-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 ① 위, 대장 또는 췌장의 전부를 잘라내었을 때
  - ② 소장 또는 간장의 3/4이상을 잘라내었을 때
  - ③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 ①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 및 한쪽의 폐를 잘라내었을 때
  - ② 장루, 요도루, 방광누공, 요관 장문합이 남았을 때
  - ③ 방광의 용량이 50cc 이하로 위축되었거나 요도협착으로 인공요도가 필요한 때
  - ④ 음경의 1/2이상이 결손되었거나 질구 협착 등으로 성생활이 불가능한 때
  - ⑤ 항문 괄약근의 기능장애로 인공항문을 설치한 경우(치료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이 있는 경우 「<불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애평가표」에 따라 장애를 평가하고 둘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5)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한 만성질환(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은 장애의 평가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13. 신경계·정신행동 장애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
1) 신경계에 장애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10~100
2)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애가 남아 타인의 지속적인 감시 또는 감금상태에서 생활해야 할 때	100
3) 정신행동에 심한 장애가 남아 감금 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감시를 요할 때	70
4)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 장보기 등의 기본적 사회 활동을 혼자서 할 수 없는 상태	40
5) 극심한 치매 : CDR 척도 5점	100
6) 심한 치매 : CDR 척도 4점	80
7) 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	60
8) 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점	40
9) 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70
10) 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40
11) 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0

나. 장애판정기준

- 1) 신경계
  - ① 「신경계에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에 손상으로 인하여 「<불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애평가표」의 5가지 기본동작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되었을 때를 말한다.
  - ② 위 ①의 경우 「<불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애평가표」상 지급률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보장대상이 되는 장애로 인정하지 않는다.
  - ③ 신경계의 장애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애(눈, 귀, 코, 팔, 다리 등)는 해당 장애도도 평가하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④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를 평가한다. 그러나, 6개월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단기간내에 사망이

- 예상되는 경우는 6개월의 범위내에서 장애 평가를 유보한다.
- ⑤ 장애인단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로 한다.

2) 정신행동

- ① 상기 정신행동장애 지급률에 미치지 않는 장애에 대해서는 『<불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애평가표』에 따라 지급률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 ② 일반적으로 상해를 입은 후 24개월이 경과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수상 후 18개월이 경과한 후에 판정할 수 있다. 다만, 장애는 충분한 전문적 치료를 받은 후 판정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고정되거나 중하게 된 장애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③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는 자격을 갖춘 임상심리 전문의가 시행하고 작성하여야 한다.
- ④ 전문의란 정신과 혹은 신경정신과 전문의를 말한다.
- ⑤ 평가의 객관적 근거
- ㉠ 뇌의 기능 및 결손을 입증할 수 있는 뇌자기공명촬영, 뇌전산화촬영, 뇌파 등을 기초로 한다.
  - ㉡ 객관적 근거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보호자나 환자의 진술
    - 감정의 추정 혹은 인정
    - 한국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빙성이 적은 검사들(뇌SPECT 등)
    - 정신과 혹은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시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 ⑥ 각종 기질성 정신장애와 외상 후 간질에 한하여 보상한다.
- ⑦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반응성) 등의 질환, 정신분열증, 편집증, 조울증(정서장애),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 등 각종 신경증 및 각종 인격장애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⑧ 정신 및 행동장애의 경우 개호인은 생명유지를 위한 동작 및 행동이 불가능하거나 지속적인 감금을 요하는 상태에 한하여 인정한다. 개호의 내용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개호와 행동감시를 위한 개호를 구별하여야 한다.

3) 치매

- ① 「치매」라 함은
- 뇌 속에 후천적으로 생긴 기질적인 병으로 인한 변화 또는 뇌 속에 손상을 입은 경우
  -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상기에 의한 기질성 장애에 의해서 파괴되었기 때문에 한번 획득한 지능이 지속적 또는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 ② 치매의 장애평가는 전문의에 의한 임상치매 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에 따른다.

4) 간질

- ① 「간질」이라 함은 돌발적 뇌파이상을 나타내는 뇌질환에 의거하여 발작(경련, 의식장애 등)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심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발작시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구역질, 두통, 인지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 ③ 「뚜렷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 ④ 「약간의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 ⑤ 「중증발작」이라 함은 전신경련을 동반하는 발작으로써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발작 또는 의식장애가 3분 이상 지속되는 발작을 말한다.
- ⑥ 「경증발작」이라 함은 운동장애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작 또는 3분 이내에 정상으로 회복되는 발작을 말한다.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애평가표

유형	제한정도에 따른 지급률
이동 동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지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지급률 40%)</li> <li>-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30%)</li> <li>- 목발 또는 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20%)</li> <li>-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파행이 있는 상태, 난간을 잡지않고 계단을 오르고 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태, 계속하여 평지에서 100m 이상을 걷지 못하는 상태(10%)</li> </ul>
음식물 섭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사를 전혀 할수 없이 계속적으로 튜브나 경정맥 수액을 통해 부분 혹은 전적인 영양공급을 받는 상태(20%)</li> <li>- 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지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15%)</li> <li>- 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식물 섭취에 있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li> <li>-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을 바르거나 음식물을 자르지는 못하는 상태(5%)</li> </ul>
배변 배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20%)</li> <li>- 화장실에 가서 번거위에 않는 일(요강을 사용하는 일 포함)과 대소변 후에 화장지로 닦고 옷을 입는 일에 다른 사람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15%)</li> <li>-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변 후 뒤처리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li> <li>-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 이상 계속되는 업무(운전, 작업, 교육 등)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5%)</li> </ul>

유형	제한정도에 따른 지급률
목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른 사람의 지속적인 도움없이 샤워 또는 목욕을 할 수 없는 상태(10%)</li> <li>- 샤워는 가능하나, 혼자서는 때밀기를 할 수 없는 상태(5%)</li> <li>- 목욕시 신체(등 제외)의 일부 부위만 때를 밀 수 있는 상태(3%)</li> </ul>
옷입고 벗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른 사람의 지속적인 도움없이 전혀 옷을 챙겨 입을 수 없는 상태(10%)</li> <li>- 다른 사람의 지속적인 도움없이 상의 또는 하의 중 하나만을 착용할 수 있는 상태(5%)</li> <li>- 착용은 가능하나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마무리(단추 잠그고 풀기, 지퍼 올리고 내리기, 끈 묶고 풀기 등)는 불가능한 상태(3%)</li> </ul>

- 주) 1. 위 추유장애의 종류 및 지급률에 관한 세부사항은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해석되지 않는 한 「상해보험 추유장애 산정기준」에 따릅니다.  
 2. 이 보험의 추유장애 지급률은 산재보험 및 자동차보험 등 타 보험에서 적용하는 추유장애 지급률과는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3. 각 관절운동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은 미국의학협회(A.M.A)의 「영구적 신체장애 평가지침」의 규정에 따릅니다.

**【별표 2】 골절 분류표 II**

약관에 규정하는 골절은 제5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07-4호, 2008.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항목을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항목	분류번호
1. 머리뼈 및 얼굴뼈의 골절 (치아의 파절 및 파절치 제외)	S02 (S02.5는 제외)
2. 머리의 압착손상	S07
3. 상세물명의 머리손상	S09.9
4. 목의 골절	S12
5. 갈비뼈, 복장뼈 및 등뼈의 골절	S22
6. 허리뼈 및 골반의 골절	S32
7. 어깨 및 팔꿈치의 골절	S42
8. 아래팔의 골절	S52
9. 손목 및 손부위에서의 골절	S62
10. 넓적다리뼈의 골절	S72
11.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S82
12. 발목의 제외한 발의 골절	S92
13. 다발성 신체부위의 골절	T02
14. 상세물명 부위의 척추의 골절	T08
15. 상세물명 부위의 팔 골절	T10
16. 상세물명 부위의 다리 골절	T12
17. 상세물명의 신체부위의 골절	T14.2

제6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항목 이외의 추가로 상기 분류표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 3】 화상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화상은 제5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07-4호, 2008.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항목을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항목	분류번호
1. 머리 및 목의 화상 및 부식	T20
2. 몸통의 화상 및 부식	T21
3.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 팔의 화상 및 부식	T22
4.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손의 화상 및 부식	T23
5. 발목 및 발을 제외한 엉덩이 및 다리의 화상 및 부식	T24
6. 발목 및 발의 화상 및 부식	T25
7. 눈 및 눈부속기에 국한된 화상 및 부식	T26
8. 호흡기도의 화상 및 부식	T27
9. 기타 내부기관의 화상 및 부식	T28
10. 다발성 신체부위의 화상 및 부식	T29
11. 상세물명 신체부위의 화상 및 부식	T30
12. 포함된 신체표면의 정도에 따라 분류된 화상	T31
13. 포함된 신체표면의 정도에 따라 분류된 부식	T32
14. 방사선과 관련된 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기타 장애	L59

제6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항목 이외의 추가로 상기 분류표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 4】(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2항 단서)**

1.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른 의무)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동법 제62조(횡단 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횡단·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등의 속도)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속도를 매시 2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제1항·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제23조(꺼어들기의 금지) 또는 제60조(갓길 통행금지 등)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꺼어들기의 금지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협길건널목의 통과)의 규정에 의한 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제1항,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에 있거나 운전의 금지 중에 있는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취 중에 운전을 하거나 동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한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동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도횡단방법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